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9조, 「항만공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공사 관할구역내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 등) ① 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선박의 제원, 사용하고자 하는 항만시설의 이름, 사용기간 등을 Port-MIS에 입력한 후 사장의 승낙을 받거나 신고(이하 "항만시설사용승낙"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3항에 따라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항선출입신고서를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 별표1 제1호'나'목 (1)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④ 별표1 제1호'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⑤ 사장은 별표1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에 의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및 동호 라목에 의한 부산 북항 마리나,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종류 등) ① 공사법 제30조 제3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징수대상 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항만시설과 동시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우리공사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정」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외의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출국여객을 수송하는 선사에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징수된 이용료의 3%를 징수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터미널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이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선박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선박안전법」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 검사 등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어촌·어항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항만을 사용하는 경우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1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선박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선박이 없거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운항명령을 받은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3. 지방청장 또는 사장으로 부터 여객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안에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신청서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사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시설사용을 승낙하거나 항만시설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승낙을 한 후 지체 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 선박 또는 화물의 입출항·반출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선박에 대해서는 한 달 단위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납입기한의 지정 등) ① 사장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대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장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납입기한 지정의 특례) ① 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다만, 선박의 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입하는 경우에는 선박 출항 후 1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입하는 경우: 화물반출일로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 출항료를 대리·납입하는 경우: 당해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4. 사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 부터 15일 이내

5. 제6조 제2, 3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고지하는 경우: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사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예상 항만시설사용료의 120% 이내의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 항만시설사용료를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전용사용료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④ 사장이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승낙을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비관리청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항만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법 제30조 제2항 및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또는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청장(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해당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장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

게 한 경우에는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 시행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장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총사업비에서 정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및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2. 타인에게 국가귀속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사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감면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무단사용료의 징수) 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승낙을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단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13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사장은 항만시설사용자 또는 임대계약자(이하 "항

만시설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기간의 단축, 승낙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유재산법」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 등이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 경우 반환 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6.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요율 및 산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 중 항로· 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또는 부산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나) 그 밖의 선박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 및 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② 항내운항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1월 이하) : 6,78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다) 할증료 대상 선박 ① 할증료 : 인근공시지가×선박면적 ×3/100×기준일수초과일/365 ② 기준일수 - 선적항(부산) : 14일 - 선적항(부산이외) : 7일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u>그 밖의 선박</u> 중 기준 톤수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를 가산 3) 할증료 대상선박은 부산항에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계류하는 부선을 말함. 4) 할증료 대상 계류지는 <u>봉래동·동삼동물량장,</u> <u>청학안벽에 한함</u>
(3) 정박료	수역시설중 정박지·선류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① 기본료(1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② 초과사용료(1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u>그 밖의 선박</u>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톤·12시간당) ① 외항선 : 2.85원 ② 내항선 : 0.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중 <u>그 밖의 선박</u>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보관 처리시설 중 화물 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 및무연탄: 원/톤 · 컨테이너화물 : 원/1TEU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h>요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일반화물</td> <td rowspan="2">외항</td> <td>입항</td> <td>341</td> </tr> <tr> <td>출항</td> <td>203</td> </tr> <tr> <td>내항</td> <td>90</td> </tr> <tr> <td rowspan="2">기계하역처리 화물</td> <td>외항</td> <td>203</td> </tr> <tr> <td>내항</td> <td>51</td> </tr> <tr> <td rowspan="2">컨테이너 화물</td> <td>외항</td> <td>4,429</td> </tr> <tr> <td>내항</td> <td>1,161</td> </tr> <tr> <td rowspan="2">송유관 이용 화물</td> <td>외항</td> <td>111</td> </tr> <tr> <td>내항</td> <td>75</td> </tr> <tr> <td>무연탄</td> <td></td> <td>27</td> </tr> </tbody> </table>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면세	구분			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출항	203	내항	90	기계하역처리 화물	외항	203	내항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내항	1,161	송유관 이용 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금의 <u>2분의1배</u> - 35': 1TEU 요금의 <u>1.7배</u> - 40': 1TEU 요금의 <u>2배</u> - 45': 1TEU 요금의 <u>2.3배</u> 를 각각 적용				
구분			요금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출항	203																																		
	내항	90																																			
기계하역처리 화물	외항	203																																			
	내항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내항	1,161																																			
송유관 이용 화물	외항	111																																			
	내항	75																																			
무연탄		27																																			
(2) 화물체화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원/ 10톤·1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야 적 장</th> <th colspan="2">창 고</th> </tr> <tr> <th>외항 화물</th> <th>내항 화물</th> <th>외항 화물</th> <th>내항 화물</th> </tr> </thead> <tbody> <tr> <td>요금면제 기간</td> <td>입항:5일 출항:7일</td> <td>4일</td> <td>입항:5일 출항:7일</td> <td>4일</td> </tr> </tbody> </table>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1-10일</td> <td>86</td> <td>65</td> <td>187</td> <td>132</td> </tr> <tr> <td>11-20일</td> <td>187</td> <td>132</td> <td>274</td> <td>196</td> </tr> <tr> <td>21-30일</td> <td>244</td> <td>183</td> <td>292</td> <td>210</td> </tr> <tr> <td>31일이상</td> <td>292</td> <td>210</td> <td>339</td> <td>236</td> </tr> </tbody> </table>	구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구분	야 적 장			창 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 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이상	292	210	339	236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 시설	(가) 국제여객 - 출항여객 1인당 : 6,000원 * 부가가치세 및 보안료 포함 (나) 크루즈여객 - 출항여객 1인당 6,000원 * 부가가치세 및 보안료 포함 (다) 연안여객 - 출항여객 1인당 ① 대인 : 1,500원 ② 소인 : 75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국제여객의 경우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2) 연안여객의 경우 2세 미만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항만공사 사장이 정하는 주차요금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라.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원/1m ² , 1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요 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창 고 (상옥)</td> <td>외항화물</td> <td>1,326</td> </tr> <tr> <td>내항화물</td> <td>956</td> </tr> <tr> <td rowspan="4">야적장</td> <td rowspan="2">포장</td> <td>외항화물</td> <td>588</td> </tr> <tr> <td>내항화물</td> <td>421</td> </tr> <tr> <td rowspan="2">미포장</td> <td>외항화물</td> <td>315</td> </tr> <tr> <td>내항화물</td> <td>231</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금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326	내항화물	956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88	내항화물	421	미포장	외항화물	315	내항화물	231	컨테이너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구 분		요 금																				
창 고 (상옥)	외항화물	1,326																				
	내항화물	956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88																			
		내항화물	421																			
	미포장	외항화물	315																			
		내항화물	231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에 의한 국제선용품유통센터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 기준을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항만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이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이프런 사용료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요율을 적용한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①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2.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p>(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p> <p>(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p> <p>(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제총톤수(국제톤수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 톤수로 본다.</p> <p>(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이 선박의 용적(m³, 길이×너비×깊이)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p> <p>(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p> <p>(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p> <p>(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p>
(2)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p>(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하며 장기체류선박에 대하여는 한달 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된 항만의 지방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 징수한다. 다만, 해당등록 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p> <p>(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의 일시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p> <p>(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p> <p>(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으로 본다.</p> <p>(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 내지 (라)의 기준을 적용한다.</p> <p>(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u>1시간마다</u>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자) 계선료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차)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p> <p>(카)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p> <p>(타)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p>
<p>나. 화물료 (1) 화물입출항료</p>	<p>(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 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 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같은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p> <p>(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p> <p>(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p> <p>(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p> <p>(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p> <p>(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p>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p>(아) 측정단위간의 상호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411 286 1433 860"> <thead> <tr> <th data-bbox="416 293 635 374">구 분</th> <th data-bbox="639 293 1428 374">환 산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6 380 635 562">중 량</td> <td data-bbox="639 380 1428 562">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td> </tr> <tr> <td data-bbox="416 568 635 680">용 적</td> <td data-bbox="639 568 1428 680">1m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td> </tr> <tr> <td data-bbox="416 687 635 853">유 류</td> <td data-bbox="639 687 1428 853"> 1ℓ= 0.2642Gallon 1Gallon = 3.7854ℓ 1Barrel(42Gallon) = 158.9873ℓ </td> </tr> </tbody> </table>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	유 류	1ℓ= 0.2642Gallon 1Gallon = 3.7854ℓ 1Barrel(42Gallon) = 158.9873ℓ
구 분	환 산 기 준								
중 량	1,000kg = 2,204.6파운드 = 1톤 1Short Ton = 907kg = 2,000파운드 = 0.907톤 1Long Ton = 1,016kg = 2,240파운드 = 1.016톤								
용 적	1m ³ = 0.883톤 = 35.305CUFT = 423.654B/F								
유 류	1ℓ= 0.2642Gallon 1Gallon = 3.7854ℓ 1Barrel(42Gallon) = 158.9873ℓ								
(2) 화물체화료	<p>(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나) 체화료 징수대상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다.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p>(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p> <p>(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이며, 최소부과면적은 1m²로 한다.</p> <p>(다)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p> <p>(라) 수역점용 면적 산정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1조 제2항을 적용한다.</p>								

<p>라. 기타</p>	<p>(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라 함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p> <p>(나) "송유관이용액체화물"이라 함은 항만 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장소 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 간 수송은 제외한다.</p> <p>(다) 측정단위 중 "톤"이라 함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바렐"이라 함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라 함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p> <p>(라) "통과선박"이라 함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 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입출항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나 선박수리에 투입된 인원 및 장비를 하선하기 위하여 다시 입항 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p> <p>(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p> <p>(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아) 접안시설 부족에 따른 정박료 면제대상에서 임대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부두 및 민자부두는 제외한다.</p>
--------------	---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 (제4조제3항제2호 관련)

1.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입출항료	100%	(1) 군함 (2) 관공선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4) 내항선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6)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7) 통과선박 (8)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9)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횡수에 상관 없이 감면) (10)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차로 부산항 신항 내에서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한·중·러·일 역내 노선의 컨테이너 전용선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북항 신선대 및 감만부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 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0% 이내	(13)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50%	(14)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40%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하며, 타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않음)

	30%	<p>(18)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p> <p>(19)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한다.(상한액 최대 16.5억 원 한도))</p> <p>* 단, 부산항의 경우 감면대상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p> <p>(20)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p> <p>(21)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p>
	25%	<p>(2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하며, 타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않음)</p>
	15%	<p>(23)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상한액 최대 16.5억 원 한도))</p> <p>* 단, 부산항의 경우 감면대상선종, 권고속도, 감면조건,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수립한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세부운영 방안을 따른다.</p> <p>(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p>
	10%	<p>(25)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항 입출항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ESI(Environmental Ship Index) 50.0점 이상인 선박(단, 동일 항차 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않음)</p>
	5%	<p>(26)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항 입출항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ESI(Environmental Ship Index) 35.0~49.9점인 선박(단, 동일 항차 내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않음)</p>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p>(1) 군함</p> <p>(2) 관공선</p> <p>(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p> <p>(4) 통과선박</p> <p>(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p> <p>(6) 연안어선</p> <p>(7) 5톤 미만의 소형선</p> <p>(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p> <p>(9)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p> <p>(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p>

	<p>(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p> <p>(1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사고 등으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당해 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p> <p>(13)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p> <p>(14)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p> <p>(15)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p> <p>(16)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항차로 부산항 신항 내에서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한·중·러·일 역내 노선의 컨테이너 전용선(접안료에 한함)</p> <p>* 단, 민자부두에서 발생한 접안료는 제외</p> <p>(17) 2026년 12월 31일까지 북항 신선대 및 감만부두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 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p>
100% 이내	(18)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을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을 100%를 적용한다.)
70%	(19)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50%	<p>(20) 수리목적으로 감천항 서방파제 안벽에 접안하는 선박</p> <p>(21)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p> <p>(22)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p>
40%	(23) 2026년 12월 31일까지「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하며, 타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30%	<p>(24)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p> <p>(25) 2026년 12월 31일까지「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선박 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p> <p>(26)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p> <p>(27)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p>
25%	(28) 2026년 12월 31일까지「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하며, 타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20%	(29)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단,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박(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감면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15%	(30)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10%	(31)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2. 화물료 가. 화물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2) 선용품 (3) 여객의 수하물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5)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9) 환적화물은 당해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 화물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15) 북극항로를 통해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3. 전용사용료	20%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다.)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 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정한다.)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